

미래전략연구센터 운영규칙

제 정 2023. 12. 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직제규정 제4조(조직) 및 제17조(미래전략연구센터)에 의하여 설치된 미래전략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센터에 한하여 적용하며,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 제규정 및 제규칙에 의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등 운영에 관해서는 미래전략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에 따른다.
②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제4조(기능 및 사업) 센터는 전북의 미래비전과 장기 발전방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미래 아젠다 발굴
- ② 미래전략과제(필요시 기획과제 포함) 수행 및 성과 확산 지원
- ③ 도정 현안 및 미래 아젠다의 대내외 지원 및 협력
- ④ 선도과제, 도정과제, 용역과제와 기타 연구사업의 상호 연계·협력 지원
- ⑤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 ⑥ 그 밖에 전북의 미래비전 및 장기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원장 직속 조직으로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의 직원은 센터장, 연구인력으로 구성하며, 센터장은 연구본부장으로 하고, 연구인력은 원장이 임명한다.

1. 센터장은 원장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센터를 대표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센터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원장이 센터장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

2. 연구인력은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며, 내부인력, 석좌연구위원, 외부 초빙연구위원, 위촉연구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6조(사업계획 등) 센터장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문서관리) 센터의 문서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장이 결재하며 그 밖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 위임전결규칙에 따른다.

부 칙 <2023.12.29>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